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0. 6. 21(월)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6. 4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6. 4
- 라. 상정일자 : 2010. 6. 15(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 2008년 환경부 제정 표준 급수 조례안을 채택 ·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 도시계획사업 내 요금정산 및 폐전 신청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
- 사용자등의 신청이나 동의 시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납부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 축소 내용을 규정함 (안 제44조제1항),“100만원에서 → 50만원으로 축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체납액 발생 방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 급수시설에 관한 권리 · 의무를 기존 수도사용자에서 신규 신청자 · 도시개발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문맥이나 자구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 안 제24조제2항의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로
 - 안 제24조제3항의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하고
 - 안 제44조제1항제3호의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부칙 안 제2조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내용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한도섭, 박희경, 배영민, 김성숙, 김을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7. 기타 특이사항

○ “ 없음 ”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공매처분의 경우”를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한다.

안 제44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종전대로 고지한다”를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 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를 “다만,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받는 수도사용자 등은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급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 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6조 (납부고지) ① ----- -----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생략)</p> <p>1.~2. (생략)</p> <p>3.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후단 신설></p> <p>② (생략)</p>	<p>제44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현행과 같음)</p>